

김웅 / 4월 / 기초GS / 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17369	20.5	14	0	0	34.5	1	1.64%	61
520997	20.5	14	0	0	34.5	1	1.64%	
517209	19.5	14	0	0	33.5	3	4.92%	
517960	20.5	13	0	0	33.5	3	4.92%	
516047	19	14	0	0	33	5	8.20%	
518180	20.5	12	0	0	32.5	6	9.84%	
519948	18.5	14	0	0	32.5	6	9.84%	
517145	21.5	11	0	0	32.5	6	9.84%	
515429	20	12	0	0	32	9	14.75%	
521209	18	14	0	0	32	9	14.75%	
521218	20	12	0	0	32	9	14.75%	
520081	20	12	0	0	32	9	14.75%	
513434	17.5	14	0	0	31.5	13	21.31%	
517479	19	12	0	0	31	14	22.95%	
514504	19.5	11	0	0	30.5	15	24.59%	
515462	19.5	11	0	0	30.5	15	24.59%	
517162	17.5	13	0	0	30.5	15	24.59%	
517330	18.5	12	0	0	30.5	15	24.59%	
517388	18.5	12	0	0	30.5	15	24.59%	
519909	19.5	11	0	0	30.5	15	24.59%	
미기입자	19	11	0	0	30	21	34.43%	
515461	19	11	0	0	30	21	34.43%	
519897	17	13	0	0	30	21	34.43%	
518109	19.5	10	0	0	29.5	24	39.34%	
520056	20.5	9	0	0	29.5	24	39.34%	
520057	19.5	10	0	0	29.5	24	39.34%	
517143	17	11	0	0	28	27	44.26%	
515446	19.5	8	0	0	27.5	28	45.90%	
518123	16	11	0	0	27	29	47.54%	
518095	18.5	8	0	0	26.5	30	49.18%	
518181	18.5	8	0	0	26.5	30	49.18%	
519740	16.5	10	0	0	26.5	30	49.18%	
518604	20	6	0	0	26	33	54.10%	
519951	17.5	8	0	0	25.5	34	55.74%	
515393	16	8	0	0	24	35	57.38%	
517282	17	7	0	0	24	35	57.38%	
517414	16	8	0	0	24	35	57.38%	
518062	17	7	0	0	24	35	57.38%	
519381	16.5	7	0	0	23.5	39	63.93%	
515447	13	10	0	0	23	40	65.57%	
515470	11	12	0	0	23	40	65.57%	
520861	15.5	7	0	0	22.5	42	68.85%	
519920	15.5	7	0	0	22.5	42	68.85%	
515479	14	8	0	0	22	44	72.13%	
517153	20	2	0	0	22	44	72.13%	
520133	14	8	0	0	22	44	72.13%	
518261	11.5	10	0	0	21.5	47	77.05%	
519584	12.5	9	0	0	21.5	47	77.05%	
521203	12.5	8	0	0	20.5	49	80.33%	
515355	10.5	9	0	0	19.5	50	81.97%	
515475	14.5	5	0	0	19.5	50	81.97%	

519346	11.5	8	0	0	19.5	50	81.97%
515472	18	0	0	0	18	53	86.89%
520839	15	3	0	0	18	53	86.89%
515567	14	3	0	0	17	55	90.16%
517212	15	2	0	0	17	55	90.16%
515492	10	6	0	0	16	57	93.44%
508992	14	2	0	0	16	57	93.44%
515466	12	2	0	0	14	59	96.72%
518205	11	3	0	0	14	59	96.72%
517193	9	3	0	0	12	61	100.00%

김웅/4월/기초GS/4회/1,2번	채점자
	전호성

안녕하세요. 김웅 변리사님 4월 기초GS 채점자 60기 전호성 입니다.

이번 GS는 통채점 방식으로 채점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주요 키워드와 답이 맞았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다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난번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분들이 조문병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안지의 인상이 확연히 달라지니, 조문병기 꼭 신경써주세요!

2. 2차 시험의 서술 방식은 논거(판례/학설/의취 요 절 호/등등)를 쓰고 그 내용 키워드에 맞춰서 사안포섭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포맷인데, 많은 분들이 앞에서 쓴 내용은 하나도 쓰지 않으며 사안포섭을 하셨습니다. * 논거 - 논거 키워드 따른 사안포섭 기억해 주세요! *

3. 문제에서 묻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주세요!
(예로, 심판의 결론을 묻는다면 인용/기각심결)

4. 특허법/상표법과 용어나 조문 혼동 주의해주세요!

5. 시간 안에 2문제 다 푸는 연습 꼭 연습해주세요! 실강 수강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6. 창작비용이성 관련 내용인데, 제33조 2항은 1항을 만족한다는 전제에서 판단되는 바, 꼭 신규성 인정되는지 선결적으로 짧게라도 논해주세요.

7. 창작비용이성 관련, 공지된 디자인과 “비유사” 하지만 당업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됩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디자인 “유사” 범위 내인 경우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된다고 기재하셨는데, 이는 “신규성” 이 문제가 됩니다.

아직, 4번의 GS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GS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은 부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1]

205

I. 실문(1)

1. 디자인권의 효력 (법 제92조).

디자인권자는 양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득권한다.

2. 문제의 소재.

① 실문 상 무의 권리는 유효하며, ② 같은 사중이 권에 함으로 양으로서 실시 중인바 ③ 또한반시 유부다 관련하여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문제된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선구.

(1) 판단의 전제

디자인 형태의 유사여부는 물품의 유사를 전제로 판단한다.

(2) 물품 유사판단 방법

① 사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거래상 통상 용인 종류의 물품인 경우 유사하다고 보며, ② 선사가권의 경우 용도와 기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물품의 유사를 긍정하며 사례도 유사한 것으로 취급할 바 있다.

(3) 디자인 유사 판단 방법

① 사례는 각 구성을 분해한 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이의 하여금 상이

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하며, ②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공통된 요소를 통해 유사판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 사안.

1) 문구의 유사여부 ... 소극.

'공기'와 '권사리'는 용도 또는 기능이 상이하며,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둘의 결합이 유사하여 비슷할 심
미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 가능성이 없는 문구인바~~
~~거래용년상~~ 등의 종류의 문구로 볼 수 없다. ~~아래~~
~~비유사 문구~~이다.

2) 형태의 유사여부 ... 판단 불요

판단이 관례로 인해 이미 처한 판권은 문구의 유사
로 다루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디자인의 비유사로 무문 2에게 침해권을 주장할
수 없다.

Good

II. 선출 (2)

1. 무효사실의 이익 취지 (법 제 121조).

공익 상, 하과 있는 디자인을 무효시킬 수 있는 제도다.

2.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익 취지 (법 제 33조 3항).

특 넓은 디자인 보호 및 선출원 보호를 위해, 출원 후 공개



혹은 등록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3. 물리의 소재

① 무 디자인의 경우 출원 후 등록된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바 확대된 선출된 주의 인용디자인 객체가 있는바, ② 확대된 선출된 주의 물건 종류 여부가 묻힌다.

4. 확대된 선출된 주의 물건

① 주체적 물건으로 타인간 디자인에 적용되며, ② 객체적 물건으로 타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유사한 것이 된다.

5. 사안

(1) 주체적 물건 준수 여부... 작곡.

무나 지은 라인이므로 확대된 선출된 주의 주체적 물건을 만족하나

(2) 객체적 물건 준수 여부... 선곡.

공기와 전사리의 경우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른바 단순히 공기 도면에 그려진 모양의 유사로 ~~무 디자인의 유사~~를 증명할 수 없다. 확대된 선출된 주의 적용 예를 보면 원성품-부품, 전체-부분, 한 번의 물건-일일물품 등 용도의 기능이 유사로 ~~유사한라고~~ 볼 수 있는바, 객체적 물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3) 결론

무엇은 심판장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바 심판장구등에
 법이나, 객체적 요건 충족으로 채택된 선행된 권리 위반이
 아닌 바 기각심결이 예상된다. *Good*

III. 서론(3).

1. 문제의 소재

공리와 관련한 무효사유가 문제되는 바, 저작권을 갖는
 법제상 권리 출현은 무공리 이후로 인정되는 문제 하
 서술한다.

2. 관련 무효사유

(1) 신규성(법 제33조 1항).

창작이 권리가 주어지는 바, 공리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
 자안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창작비유성(법 제33조 2항)

디자인보호법 목적이 대가 창작 장려와 산업발전을 위해
 공리디자인 또는 주지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3. 신규성 여부 ... 작곡.

(1) 신규성 요건

① 주체적 요건으로 일반 수완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② 객
 체적 요건으로 공리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것이 인정
 되며, ③ 시기적 요건으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공리된 것이

요구된다.

(2) 사안.

무의 공기는 사중이 판백리이 공연식시된바, ~~사기각은~~ ~~을~~ 만족하나 ~~물론~~이 ~~바우사~~로 무라 2의 디자인도 바우사한 바 신규성은 인정된다.

4. 창작비용이성 여부 ...적극

(1) 판권 방법 (事例)

공디자인 또는 우리 형상의 적합 등을 고려 모방하여 출원하는 등 흔한 창작수행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비용이성 위반이다.

(2) 하나의 공디자인으로부터 용이 (事例)

하나의 공디자인을 기준으로 창작이 용이한 경우에도 창작비용이성 부정이 가능하다.

기유단로 판권
해당사안

(3) 사안

2의 디자인은 승자된 무 디자인이 표현된 강이꽃 모양과 극히 유사한 모양을 표현하는 바, 창작 비용이성은 물론이 유사를 권제로 하기 않으며 하나의 공디자인으로부터 용이 창작도 표현하므로 창작비용이성 위반에 해당한다.

5. 결론

따라서 2의 권사리 의견 등록디자인은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무효될 수 있다.

끝.



[문제 - 2].

14

I. 문제의 소재.

디자인 B는 디자인 A를 일부 변형한 바,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등록요건 만족 여부가 달라진다. 무의 발명은 권리요건을 본 선출된 사항이 없는 바 이하 ① 유사한 변형의 경우, ② 바꾸사하나 창작이 용이한 경우, ③ 창작이 비용이한 경우를 나눠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II. 관련 등록요건

1. 신규성 (법 제33조 1항)

디자인은 창작의 대가인 바, 중의 디자인나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창작비용이성 (법 제33조 2항)

디자인의 창작대가성 및 선출발권을 고려하여, 공의 디자인 또는 우리 형제로부터 창작이 용이한 디자인의 경우를 구분한다.

III. 창작이 비용이한 경우.

선출된 디자인 A와 바꾸사하여 창작이 비용이한 바 변의 흥경 없이 등록 가능하다.

IV. 바꾸사하나 창작이 용이한 경우.

1. 선행 디자인 확정

2024. 5. 1. 디자인 A는 최초로 공개된 바 선행 디자인의 경이 승자로 인하여 인정된다.

2. 출원디자인 및 대비.

디자인 등록출원 X의 디자인은 B인 바, 일부 변형 정도와 A를 통해 창작이 용이하므로 창작비용이상 출원에 해당한다.

V. 변형이 유사한 경우.

1. 디자인 획정.

2024. 5. 1. 공지로 인한 디자인 A가 선행디자인, 출원 X의 디자인 B가 출원디자인이 되며

2. 대비

① 양 디자인은 알갱이개로 문패가 동일하고, ② 변형 정도가 낮아 형태도 유사한 바 ③ 신규성 출원에 해당한다.

VI. 극복 방안.

1. 문제점.

창작이 용이한 경우와 형태가 유사한 경우는 각각 창작비용이상과 신규성 위반의 지적이유가 존재하는 바, 극복방안으로 신규성 상한의 예외를 검토한다.

2. 신규성 상한의 예외(법 제36조)

조기 공개 유무 및 출원과 보편을 위해, 소량인 하위 가공의 디자인이 대하여 비공지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3. 요건 및 절차.

① 출원자의 디자인이 공지되어야 하며, ② 공지일로부터

터 12개월 이내 출원이 요구된다. ③ 취리 기재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효과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판단 시 비용으로 간주한다.

5. 사안.

① 무 자신의 디자인이 공개된 것이며, ② 12개월 이내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③ 취리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을 통하여 가결이후 등록이 가능하다.

VII 결론.

변형 정도에 따라 나눠 검토한바 ① 창작 비용이 인정되는 변경은 시기적 구매 없이 항상 등록이 가능하나, ② 창작이 용이한 수준부러는 창작 비용이성과 신규성 충족으로 인하여 2025.5.1 (공리인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 상선의 여지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Good <이하 여백>

① 새 키워드 사안 1건
추진 하였습니다 ㄷ